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57

발의연월일: 2021. 1. 13.

발 의 자:조명희·서일준·백종헌

서정숙 · 조수진 · 조태용

유의동 · 홍준표 · 권영세

김은혜・이 영・황보승희

구자근 • 전주혜 • 윤주경

최승재 · 이철규 · 윤희숙

윤한홍 • 권명호 • 정경희

양금희 • 윤두현 • 박대출

한기호 · 김미애 · 정희용

김형동 · 김승수 · 이종성

최연숙 · 김기현 · 신원식

김영식 의원(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재확산됨에 따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기존의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는 감염병 현황과 인구밀도, 지역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행정편의적·일괄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방역에

한계가 있고, 국민의 생활권과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기존 에너지 분야에 활용되던 스마트그리드 방식을 차용해, 지역 특성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하며,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제34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구밀집도, 감염병 발생이력, 지역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감염병 예방·방역체계 구축 방안 제10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현황 등"을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별·감염경로별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의 수립 등) ① (생 략)	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구밀집도, 감염병 발생이력,
	지역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u>감염병 예방·방역체계 구축</u>
	<u>방안</u>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②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	
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 6. (생략)
- ③ ④ (생 략)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 저 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 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 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 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 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 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 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 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5의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
보처리 전문가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세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
개) ①
<u>현황, 감염병의</u>
지역별・연령별・감염경로별 발
<u>생 및 검진 일일 현황 등</u>
<u>.</u>
② ~ ⑤ (현행과 같음)